

"주 최대 52시간 시행,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"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

(경유)

제목 질의회신

- 관련: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질의회시 요청 건(서울서남권직장맘 20190823-01, 2019.8.23.)
- 귀 센터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
가. 질의
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하고자 사업주에게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출산 후부터 사용 하라며 거부한 경우,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로 볼 수 있는지

(갑설)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에 해당-본 센터 의견
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고, 동법 제2항에서 정한 시기 내에 신청하였다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받아주어야 함
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정하고 있을 뿐 출산한 날부터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
-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률취지 상 출산 전에도 산모와 태아의 안정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

(을설)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에 해당되지 않음

-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로 볼 것은 아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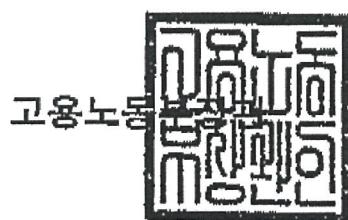
나. 회신

- 관련법령(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)

- 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"배우자 출산휴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.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

-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,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(예정)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-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전에 사용(출산(예정)일 포함)하고자 청구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. 끝.



주무관	정상민	행정사무관	김나래	여성고용정책 전결 2019.12.4.
협조자				과장 이현숙

시행 여성고용정책과-3212 (2019. 12. 4.) 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, 고용노동부) 정부세 / www.moel.go.kr
종청사 11동

전화번호 044-202-7476 팩스번호 044-202-8054 / bokdol2010@korea.kr / 비공개(7)